

2025년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

수출용 농식품의 원료단계부터 선적단계까지의 선도유지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농산물 폐기물량 감축 및 품위 향상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「2025년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」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7월 7일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

1

사업개요

- 지원규모 : 10개 업체 내외(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- 지원기간 : 약정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(11~약정일 이용분 소급정산 가능)
 - * 예산소진 시, 사업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
- 지원대상 : 국산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(원재료 포함) 수출 중소·중견기업
 - * 제외대상 : 수산·임산물 수출업체(단, 농식품 및 수·임산물 수출시 농식품에 한하여 지원), 상호출자제한기업, '24년도 지원사업 참여 포기 업체
- 지원내용 : 수출 농축산식품의 저온저장시설 임차 및 저온수송차량 임차 이용료
 - 중복정산 방지 위하여 지원항목 이용 후 직접수출(수출대행자)로 진행된 경우에만 정산하며, 간접수출(제조자, 수출화주) 실적 불인정

지원항목	지원내용
저온저장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수출물량 보관을 위해 별도로 임차한 저온창고로서,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 '창고시설' 등 저온저장시설의 임차 이용료* 입고일자 불명, 내수용과 혼합 등으로 수출물량의 보관기간 산정 어려운 경우 정산불가* 동식물 관련시설 및 버섯재배사 농업창고 등 임차 불가능한 경우 정산불가
저온수송차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수출을 위해 별도로 임차한 냉장·냉동 탐차 등 저온수송차량의 임차 이용료* 사업자가 아닌 개인 및 냉방장치 가동하지 않는 경우 지원불가하며, 컨테이너 운송 차량은 지원제외

□ 지원품목 : 국산 ①신선농·축산물, ②가공식품(주원료가 50% 이상 국산) 및 ③가공식품의 주원료(국산)

- 신선농·축산물은 국산으로 간주하며, 가공식품은 <주원료 국산 인정 기준>에 따라 원재료 증빙 제출(택1)하여 국산이 확인된 것에 한하여 지원
 - 1) 주원료 국산 표시 또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원료에 국가명과 함께 비율 표시된 품목제조보고서
 - 2) 대한상공회의소(업체 발행분, 원산지확인서 불인정)에서 발행한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와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

주원료 국산 인정 기준

- ☆ 원칙 : 주원료 기준은 「식품공전 제5. 식품별 기준 및 규격」에 준하여 설정
- ★ 주원료 : 해당 개별식품의 주용도,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식품과 구별·특정 짓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
- ① 김치, 인삼제품·막걸리 제외한 전통주·녹차·유자제품 및 축산가공품은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주원료가 100% 국산인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, 수입산 혼입 시 지원불가
- ② 식물성원료(곡류, 서류, 콩류, 과실, 채소 등)와 동물성원료(식육, 원유, 알류)를 대상으로 하며, 식물성 원료 중 조류(藻類), 향신료, 호프 등은 주원료 기준대상에서 제외하며, 물·식품첨가물·주정 및 당류(당류가공품 포함)는 주원료 대상에서 제외
- ③ 주원료 구분이 모호한 경우 해당제품의 원료성분 중 가장 많은 원료비율(%)의 원료로 간주

□ 지원한도 : 최대 10백만원에서 90백만원까지 선정단계별 차등 지원

- 최근 2개년 평균 인정 수출실적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한도 차등 부여하며,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(Trass)에 집계되는 수치에 한하여 인정

평균 수출실적(만\$)	10이상~ 50미만	50이상~ 100미만	100이상~ 300미만	300 이상~ 500 미만	500 이상
배정한도(백만원) (국비 80% 기준)	10	20	30	60	90

- 집행률 평가 : 선정업체는 배정받은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사업비 집행률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 시 불이익 부여
- 사업 중도 포기 및 정산미신청 시 향후 1개년도 동 사업 참여 제한
 - 최종예산 집행률 70% 미만 : 차년도 최대 배정한도 50% 감액,
 - 70% 이상 80% 미만 : 20% 감액, 80% 이상 90% 미만 : 10% 감액
 - * 단, 사업 중간 증·감액 수요조사로 조정된 경우 조정 이후 배정액으로 이행률 산정

□ 기준단가 : 저온저장시설과 저온수송차량 항목당 이용 1건 단가별 적용되는 한도로서 추후 선정업체 대상 별도 안내

□ 문의처 : aT 신선수출지원부(061-931-0836 / jmk@at.or.kr)

2**신청 및 제출서류**

- 신청기간 : 공고일 ~ 2025.7.18.(금) 23:59까지 * 예산규모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연장 가능
- 신청방법 :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통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- 제출서류
 - (공통) 사업신청서·사업계획서(첨부서식), 사업자등록증,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, 표준재무제표증명원(최근 2개년도) 각 1부
 - (가공식품 限) 품목제조보고서(주원료 국산 여부 확인 증빙)
 - *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(Trass) 조회 수출실적에서 제출된 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서(국산 확인)에 한해 실적 인정
- 제출처 :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

3**선정평가 및 정산방법**

- 선정평가 : 사업계획 및 수출실적 등 감안, aT 소관부서로 구성된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
- 정산방법 : 전문 원가정산기관 활용하며 품목·저장기간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방식 선택 가능
 - 업체별 취급 품목 특성 등에 따라 사업 주관기관에서 선정 시 신청업체 희망사항과 달리 정산방식 유형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선정 이후에는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산방식 변경 불가
 - (A형) 연 3회(5, 9, 12월) 정산 / 신선농축산물 등 단기저장 품목
 - (B형) 연 1회(12월) 정산 / 김치용 배추 등 장기저장 품목

A형	사업수행기간	1차(1~4월)	2차(5~8월)	3차(9~11월)	비고
	정산신청기한	~5.10	~9.10	~12.10	단기저장 품목대상
B형	사업수행기간	4차(1~11월)			비고
	정산신청기한	~12.10까지 신청			장기저장 품목대상

- * 원본대조필 날인 후 출력하여 원가정산기관에 정산기한 내 우편발송 제출
- * 국세징수법 107조(납세증명서의 제출)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(보험료등의 완납 증명)에 따라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, 4대보험 완납증명서 미제출 시 국고보조금 정산 불가

- 원가정산기관 및 정산신청 증빙서류 : 선정업체 대상 추후 별도 안내

4

지원기준

구분	기준단가(한도)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저온 저장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관면적 기준(호실당) (특지) 27,000원/m²,월 (갭지) 23,000원/m²,월 (을지) 21,000원/m²,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특지) 특별시, 특별자치시 및 광역시 (갭지) 시지역 (을지) 상기 지역을 제외한 전(全)지역 ■ 부가세 포함 기준 ■ 1개월은 30일로 적용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저온 수송 차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일반 화물차(단위 : 원/PLT, 원/km)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52 840 805 1982"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PLT (공동물류)</td> <td>2파렛트이하</td> <td>60,000</td> </tr> <tr> <td>3파렛트이상</td> <td>55,00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2톤미만</td> <td>100km이내</td> <td>2,211</td> </tr> <tr> <td>101~200km</td> <td>1,254</td> </tr> <tr> <td>201~300km</td> <td>953</td> </tr> <tr> <td>301km이상</td> <td>889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3.5톤이하</td> <td>100km이내</td> <td>2,711</td> </tr> <tr> <td>101~200km</td> <td>1,506</td> </tr> <tr> <td>201~300km</td> <td>1,344</td> </tr> <tr> <td>301km이상</td> <td>1,18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5톤이하</td> <td>100km이내</td> <td>3,253</td> </tr> <tr> <td>101~200km</td> <td>1,807</td> </tr> <tr> <td>201~300km</td> <td>1,612</td> </tr> <tr> <td>301km이상</td> <td>1,416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8.5톤이하</td> <td>100km이내</td> <td>3,904</td> </tr> <tr> <td>101~200km</td> <td>2,169</td> </tr> <tr> <td>201~300km</td> <td>1,935</td> </tr> <tr> <td>301km이상</td> <td>1,70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25톤이하</td> <td>100km이내</td> <td>4,295</td> </tr> <tr> <td>101~200km</td> <td>2,386</td> </tr> <tr> <td>201~300km</td> <td>2,128</td> </tr> <tr> <td>301km이상</td> <td>1,869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PLT (공동물류)	2파렛트이하	60,000	3파렛트이상	55,000	2톤미만	100km이내	2,211	101~200km	1,254	201~300km	953	301km이상	889	3.5톤이하	100km이내	2,711	101~200km	1,506	201~300km	1,344	301km이상	1,180	5톤이하	100km이내	3,253	101~200km	1,807	201~300km	1,612	301km이상	1,416	8.5톤이하	100km이내	3,904	101~200km	2,169	201~300km	1,935	301km이상	1,700	25톤이하	100km이내	4,295	101~200km	2,386	201~300km	2,128	301km이상	1,86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공동물류) 공동물류 참여업체 대상으로 300km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하며, 공동물류 참여 증빙 별도 제출 필요(떨기 통합조직 발행분 限) ■ (공통) 운임은 백원미만을 절사하여 적용(단, 부가세 제외)하며, 거리(km)는 네이버지도 '거리우산'으로 측정하여 소수점 절사하여 적용 ■ 차량의 톤수는 자동차등록증 상 1.제원의 ⑳ 최대적재량으로 판단 ■ 부가세 제외 기준
PLT (공동물류)	2파렛트이하		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파렛트이상	55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톤미만	100km이내	2,2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1~200km	1,25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01~300km	95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01km이상	88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5톤이하	100km이내	2,7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1~200km	1,50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01~300km	1,34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01km이상	1,1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톤이하	100km이내	3,25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1~200km	1,80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01~300km	1,6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01km이상	1,4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.5톤이하	100km이내	3,90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1~200km	2,16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01~300km	1,93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01km이상	1,7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5톤이하	100km이내	4,29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1~200km	2,38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01~300km	2,12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01km이상	1,86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